

1. 제안이유

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,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‘평소 행실’과 ‘근무성적’을 삭제하고 ‘혐의 당시 직급’과 ‘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’을 추가(안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)
- 나. 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명확화(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제11호 일부 개정 및 제12호 내지 제14호 신설)
 - 1) ‘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’, ‘부정청탁’, ‘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’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
 - 2)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‘소극행정’을 명시
- 다. 소극행정의 정의를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과 통일(별표 1 일부 개정)
- 라. 단순 오기 정정(별지 서식 일부 개정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21. ~ 6. 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평소의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”을 “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”로, “적극성, 뉘우치는 정도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”을 “적극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소극행정

12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13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14.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(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

제7조제2항 중 “관련도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”을 “관련도”로, “평소 행실, 근무성적”을 “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”으로, “정도”를 “정도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”으로 한다.

별표 1 비고 제2호 중 “공무원의”를 “공무원이”로, “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”를 “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”로, “업무행태”를 “행위”로 한다.

별지 중 “하며,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2”를 “하며,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3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: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2”를 “: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12호 내지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우선심사 신청서

1. 혐의자 인적사항	성명(한글)		생년월일
	(한자)		
	소속	직위(직급)	재직기간
	주소		
2. 우선 심사 청구 사유			

[] 징계등 혐의자 :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, 귀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서면진술로 갈음하고자 하며,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.

[]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: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.

위 [] 란에는 √ 표시를 하십시오

년 월 일

(징계등 혐의자) 또는 (징계의결등 요구권자)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징계위원회 귀중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)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(이하 “징계부가금”이라 한다) 혐의자의 비위(非違)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<u>평소의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, 뉘우치는 정도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</u> <u>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</u> 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,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,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(이하 “징계등”이라 한다)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		제2조(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</u> ---- <u>적극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4조(징계의 감경) ① (생략)		제4조(징계의 감경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		② -----		

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8. ~ 10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③ (생략)

제7조(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소극행정

9. ~ 11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
12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13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
14.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 (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<u>관련도</u>, <u>규제</u> <u>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</u> <u>처리의 적극성</u>, 징계등 혐의자 의 <u>평소 행실</u>, <u>근무성적</u>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 인 정황, 누우치는 <u>정도</u>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 다. 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 <u>관련도</u> ----- ----- ----- -- <u>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</u> <u>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</u>----- ----- <u>정도, 규제개</u> <u>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</u> <u>처리의 적극성</u> ----- --.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